

국가신약개발사업 과제관리 및 운영방안

국가신약개발사업 R&D 워크숍

R&D본부 과제운영팀 | 김원경 선임연구원

WWW.KDDF.ORG

CONTENTS

01

과제운영팀 소개

과제운영팀 역할 및 업무 소개

02

과제선정 및 협약

과제접수, 선정, 협약협의, 전자협약체결

03

연구개발과제 수행

연구개발비의 사용, 협약변경

04

평가 및 보고

마일스톤평가, 특별평가, 연차보고, 최종평가

05

성과의 귀속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관리, 기술료 납부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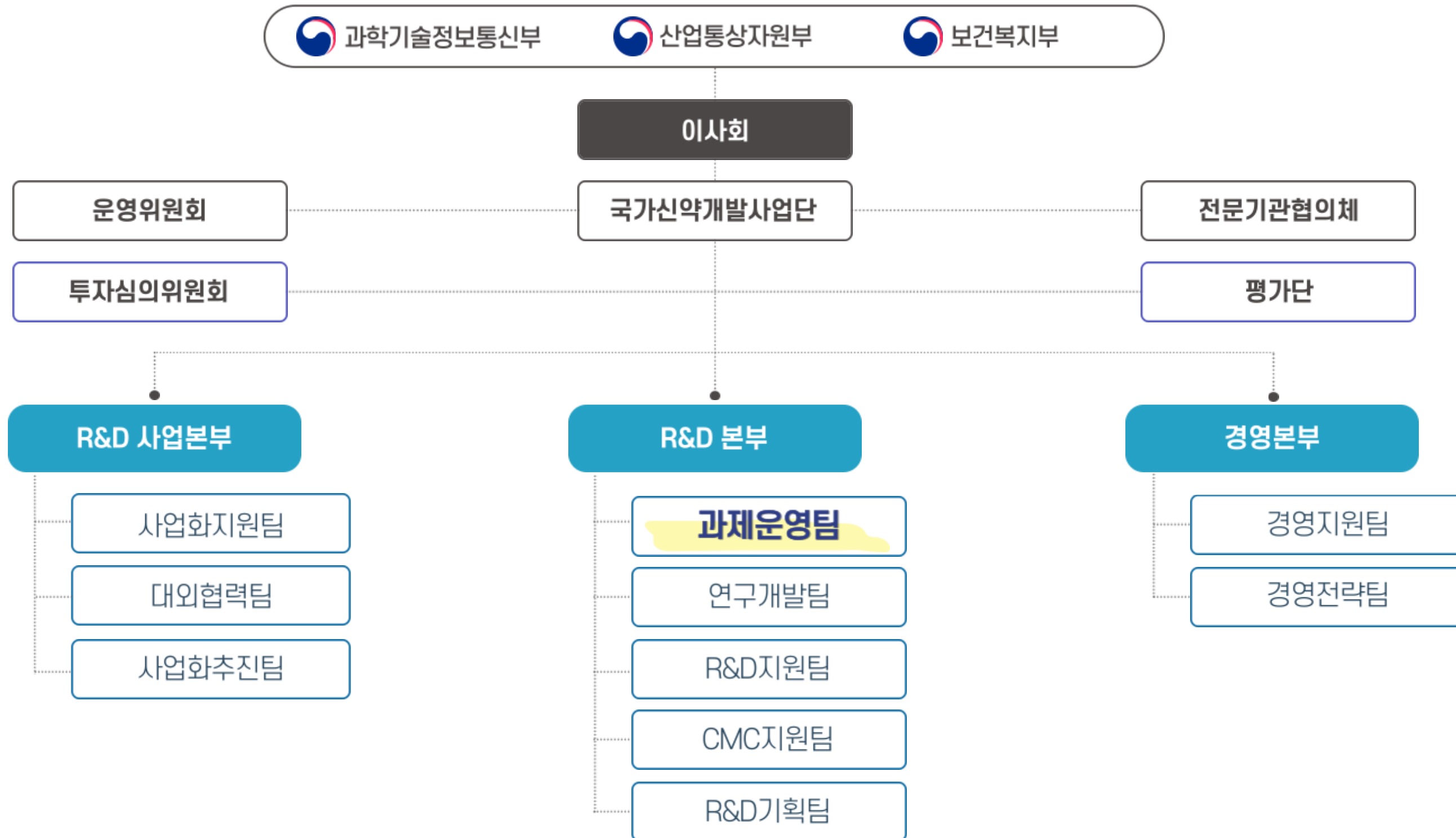
연구개발비 정산·회수

연구개발비 정산 절차 및 방법

01. 과제운영팀 소개

과제운영팀의 역할 및 업무 소개

과제운영팀 소개



과제운영팀 역할

효율적 연구비 집행

1. 효율성과 신뢰성 기반 연구비 관리
2. 국가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명확화
3. 협약 이후 최대한 빠른 기한 내 지급

연구성과 창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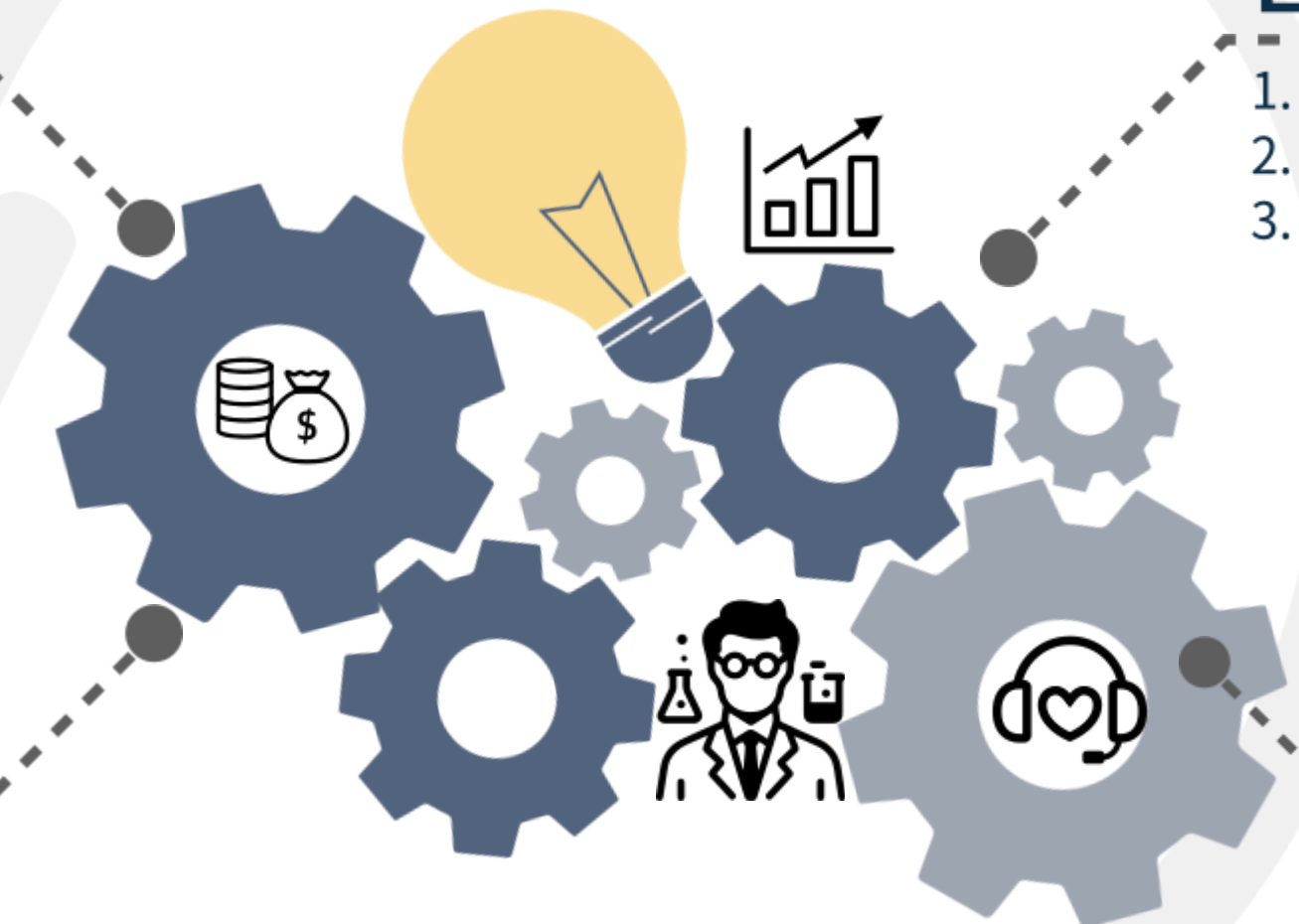
1.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의 자율성 보장
2. 연구성과 조사 및 분석
3. KDDF 추진 사업과 연계 지원

연구자 행정 편의 지원

1. 불필요한 행정절차 지양
2. 연구자 맞춤형 행정 관리 시스템 구축
3. 과제통합관리를 통한 편의 기능 확대

애로사항 대응 지원

1. 연구개발기관 문의사항 응대
2. 현장 애로사항 의견 수렴 및 부처 전달



02. 과제선정 및 협약

과제운영팀의 역할 및 업무 소개

과제선정 및 협약

1. 사업공고 및 접수

1. 신규사업 공고(연 2회)
(홈페이지, IRIS, NTIS 등)
2. IRIS를 통한 과제 접수(30일)
반드시 마감기한 엄수

2. 과제 선정

1. 접수마감 및 사전검토
2. 서면평가, 발표평가, 실사평가
3. 투자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
4. 선정결과 통보(공문)

3. 협약협의 및 체결

1. 협약협의 : 평가과정에서 제기된 보완의견 반영한 연구계획 수립 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절차
2. IRIS 전자협약 체결

4. 연구 개시

1. 민간부담금 납부 안내(공문)
2. 민간부담금 기한 내 납부(Ezbaro)
3. 입금내역 확인
4. 정부출연금 지급(주관/위탁 각각)

- IRIS 및 Ezbaro 회원가입
- 연구자등록 및 기관등록
- 연구자 매뉴얼 다운로드
- 연구개발계획서 시뮬레이션

- 서면평가에서 3배수/
발표평가에서 1.5배수 선정
- 발표는 연구책임자만 가능
- 실사평가에서는 보고서만 도출
- 투심에서는 우선순위 결정

- 기업용 범용인증서 준비
- 연구개발비 지급계좌 준비
- 참여연구원 연구윤리동의
- (협약용)연구개발계획서 제출

- Ezbaro 매뉴얼 숙지
- Ezbaro 회계담당자 권한부여
- 협약일~연구비 지급 이전까지 집행 금액 소급 가능

03. 연구개발과제 수행

연구개발비의 사용, 협약변경

연구개발비 사용

When?

(신규) IRIS 전자협약체결 > 민간부담금 납부 안내 > 민간부담금 입금내역 확인 > 연구비 지급
(계속) NEW 연차생성(IRIS일괄처리) > 직전연차 집행내역 마감(이지바로) > 잔액 자동 이월 >
민간부담금 납부 안내 및 입금 확인(2월경) > 연구비 지급(3월경)

- ※ 신규과제는 협약일부터 연구비지급 이전까지 집행한 금액 추후 소급 가능
-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지급이 부득이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도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자체재원 사용 내역은 추후 소급 가능(혁신법 매뉴얼 p229)

How?

모든 국가 R&D 과제는 아래 법령에 근거하여 수행하여야 함

- 연구개발혁신법[시행 2024.7.24.]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시행 2024.2.29.]

- ※ 혁신법 및 연구비 사용기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수행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사용

협약의 변경

How?

(통보사항) 사전 논의(담당PM) > IRIS R&D 업무포털 > 과제수행 > (승인통보)협약변경신청

(승인사항) 사전 논의(담당PM) > 공문접수 > 평가단심의(약 월 1회 개최) > 승인여부 통보 > IRIS 반영

※ 연구항목간 연구비 이동의 경우, 경미한 협약변경의 건이라 하더라도 연구개발목표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논의(담당PM) 필요

When?

(협약변경 기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함

(승인성 협약변경) 사업단으로 최소 종료 2달전까지 신청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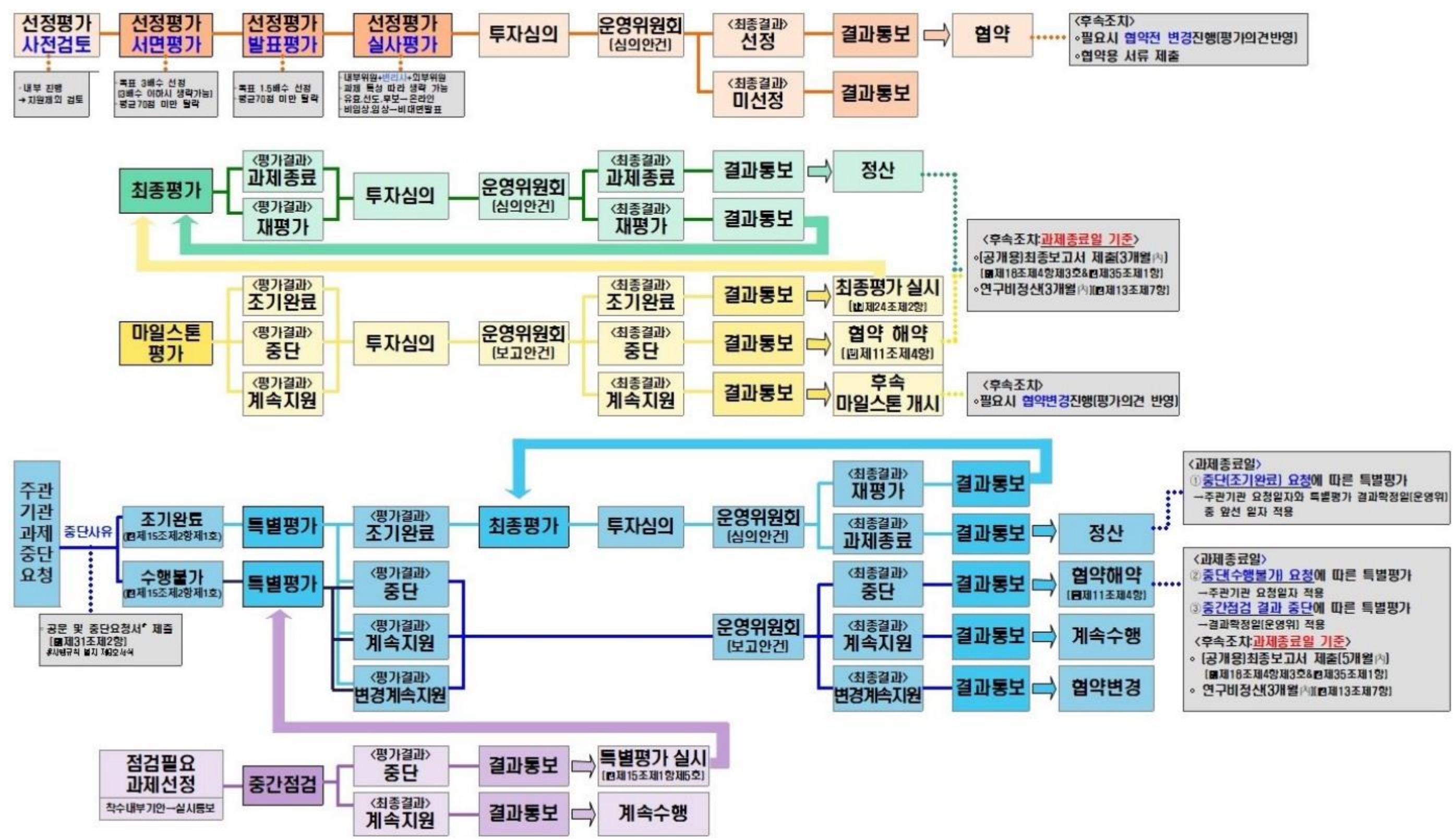
(통보성 협약변경) IRIS 업무포털에서 종료일까지 최종제출 또는 기관담당자승인시 반영 가능

★ 과제종료일 이후에는 어떠한 사항의 협약변경도 불가하므로, 반드시 과제 종료일 전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04. 평가 및 보고

마일스톤평가, 특별평가, 연차보고, 최종평가

국가신약개발사업 평가 절차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보고

연차보고서

매년 해당 연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보고서를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세부내용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수행내용및 결과 / 향후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

최종보고서

연구개발기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보고서로, 협약 종료일 후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비공개신청이 필요할 시 반드시 최종보고서 제출 후 3개월 이내에 비공개신청을 완료해야 함

※ 세부내용 :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 성과 및 관련 분야 기여도 / 성과관리 및 활용 계획 등

성과활용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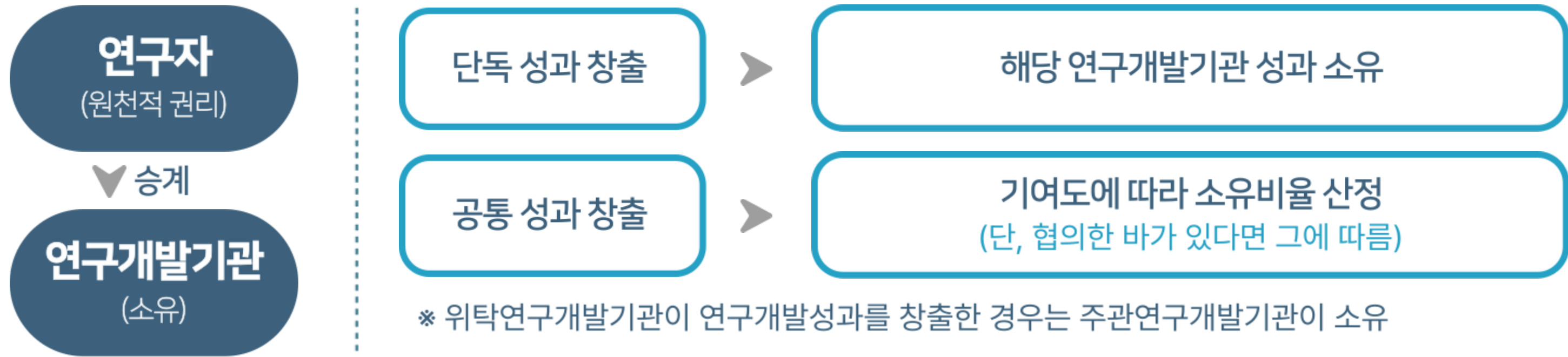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이후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세부내용 : 연구개발성과의 구체적 내용 및 활용 실적 / 파급효과 / 그밖에 보고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는 성과

05. 성과의 귀속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관리, 기술료 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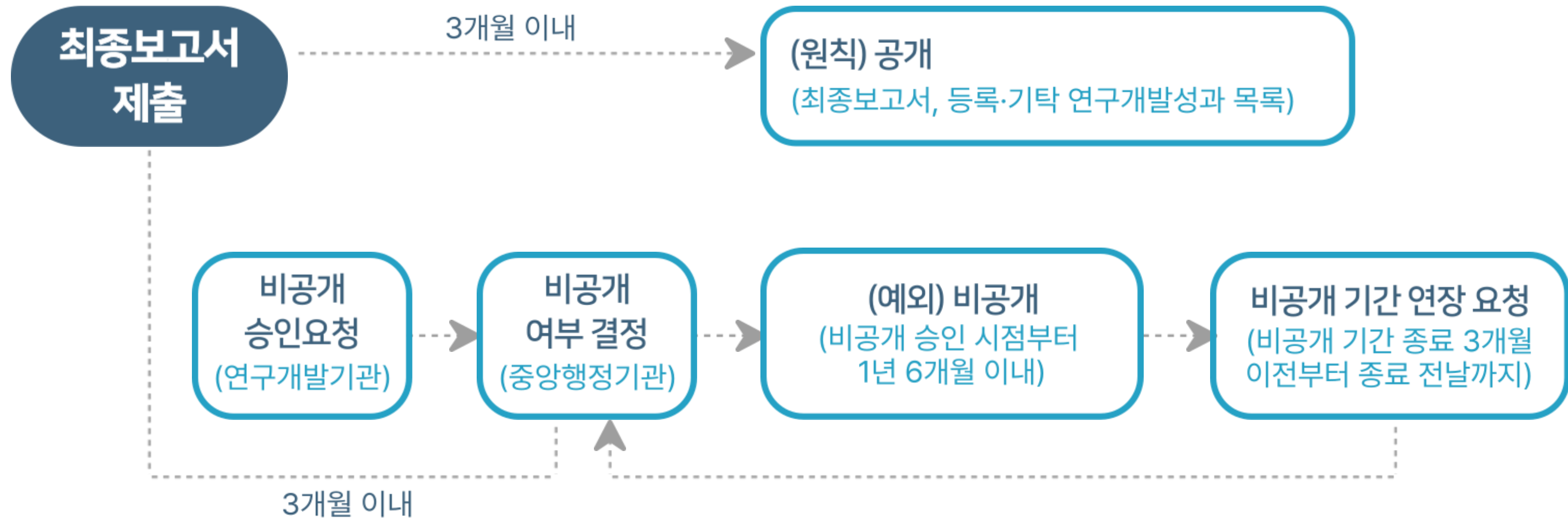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으로 하되, 해당 연구자로부터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즉,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원천적 권리**는 **연구자**에게 있음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및 비공개 절차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성과등록

(목적) 국가 R&D사업의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 기획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

(집행현황 및 성과 산정 기간) : 당해연도, 예) 2024.01.01. ~ 2024.12.31.

(성과 등록 기간) : 매년 연말부터 연초까지, 자세한 등록 기한은 별도 안내

(입력 방법) IRIS(과제지원시스템) > 과제수행 > 성과 > 성과등록

※ 증빙자료 : 논문·특허사사표기, IND승인서, 기술이전 계약서, 희귀약품지정서, NDA / 품목허가 승인서 등

추적조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의 유지·관리·

공동활용, 정보공개·연계, 추가적인 연구개발 등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파악하기 위해

성과활용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조사·분석하는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 말일까지 성과활용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논문 및 특허 사사표기

논문 사사

(국문)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의 재원으로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의 국가신약 개발사업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0000000000, RS-2025-00000000)(NTIS, IRIS과제번호 기입)

(영문)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Korea Drug Development Fund funded by Ministry of Science and ICT,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d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0000000000, RS-2025-00000000, Republic of Korea)(NTIS, IRIS과제번호 기입)

※ NTIS 과제고유번호 : 매년 새로 부여되는 10자리로 구성된 번호 / ※ IRIS 과제번호 : RS-사업연도-8자리숫자로 구성

특허 사사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0000000000, RS-2025-00000000)(NTIS, IRIS과제번호 기입)

【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연구사업명】 국가신약개발사업

【연구과제명】 000000000

【연구관리전문기관】 재단법인 국가신약개발사업단

【기여율】 특허가 2이상 과제에서 지원된 경우 국가신약개발사업 기여율만 기재, 단 기여율의 합은 100% 임

【주관연구기관】 000000000

【연구기간】 협약의 체결일과 협약의 만료일 기재

기술료 징수·납부·사용

기술실시 계약보고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 '기술실시계약보고서'를 공문 제출

기술실시 계약서

주요내용은 블러처리 하더라도 **개발 권리** 관련 부분은 확인 가능하도록 제출

기술실시 현황자료

기술실시 계약 보고 시 기술이전 발생 내역 함께 제출

기술료 납부

실시기관으로 부터 기술료 징수 시 **30일 이내**에 '기술료 징수 및 납부 결과보고서' 공문 제출

※ 관련 증빙은 IRIS R&D업무포털 성과등록에도 입력 필요

06. 연구개발비 정산·반납

연구개발비 정산 절차 및 방법

연구개발비 정산·반납

정산 대상

연구개발비 **전액**(연구개발비에 산입한 정부지원금 이자 포함)

사용실적보고

연구개발과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지바로**를 통해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정산 실시

연구개발과제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정된 **위탁회계법인**에서 정산 완료*

정산 결과 통보

연구개발기관은 위탁회계법인으로부터 정산 결과를 통보 받은 후 **1개월 이내** **회수금액** 반납

연구개발비 반납

직접비 사용 잔액 / 불인정 금액 / 간접비 잔액(건별지급유형 과제 및 해약된 과제의 경우)

* 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8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감사합니다

성공적인 신약개발,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WWW.KDDF.ORG